#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지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133

발의연월일: 2021. 1. 4.

발 의 자:지성호·정찬민·태영호

정진석 · 서일준 · 박대수

성일종 • 윤창현 • 권영세

최춘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.

그러나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해당 법률에 의무구매 비율이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북한이탈주민 고용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 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17 조의5).

##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"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"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6. "공공기관"이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

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7조의5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, 용역 및 공사(이하 이 조에서 "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의 물품"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 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의 물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

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5. "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 업주"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 6. "공공기관"이란 「중소기업 <신 설>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 제2조제2호에 따 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제17조의5(우선 구매 등) 통일부 제17조의5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 주민 고용 모범사업주(「중소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 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소기업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조에서 같다)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, 용역 및 공사(이하 이 조 에서 "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물품"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 ②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

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의 물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이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고하 여야 한다.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 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